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사유의 확대를 통해 적시 충원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5급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협의 폐지(안 제3조)

긴급한 결원 보충 등 필요시 각 부처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이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 여건 마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 제도 개선(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하도록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기 결원보충 등 안정적 인사운영 지원
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35조)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직 진출 기회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24. ~ 9. 23.) 예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을 “5급”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유예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3제7항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으로 한다.

제25조제9항 전단 중 “포기하는”을 “포기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유예하는”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 ③ (생략)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u>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u> 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④ ----- ----- ----- ----- ----- <u>5급</u> ----- ----- -----.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생략)	제23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u>포기하는</u>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⑦ ----- ----- <u>포기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2에 따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유예하는</u> ----- ----- ----- -----.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제23조의3(일반외교 분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합격 결정)

① ~ ⑥ (생략)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 ⑧ (생략)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포기하거나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 입교를 유예하는 -----

-----.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포기하거나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유예하는 -----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
자를 결정하되, 총득점이 동일
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
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④ (생 략)

-----.

⑩ (현행과 같음)

제35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
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15